

# 「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: 신용하 · 김낙관 · 김재우 의원(3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원섭, 김춘남, 소진혁, 이상호, 이지연,  
정지원, 추은희 의원(8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신 용 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범위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(안 제4조~제5조)
- 보조사업의 종류 및 보조금의 신청 등(안 제6조~제7조)
-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(안 제8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건축법」제11조 및 제22조
  -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」 제23조
 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7. 8. ~ 7. 13.) 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## ○ 검토 결과,

-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, 옥상 방수, 우·오수관 정비, 옹벽·담장 보수 등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,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산보고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유지·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## 5. 토 론 요 지

- 안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을 '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중 8세대 이상'으로 수정하여 한정된 예산 대비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. 다만,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향후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람.

-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제3호에 '단지 내 바닥 보수'를 보조사업의 종류로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또한, 안 제6조제4호의 '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·보수 사업'은 범위가 모호하므로 삭제하여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